

## 제1장 계획의 개요

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

# 제1장 계획의 개요

##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### 1. 계획수립의 배경

#### 1) 국토계획의 기조변화

-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녹색성장전략을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
  - 쏠지구적 기후변화와 에너지·식량 등 자원문제 심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선제적인 재해 대응체제 구축 및 저탄소·에너지 절감형 국토관리방안 수립
  -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 잠재력 제고와 지역특화발전 도모
  - 녹색성장의 기반으로서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전략 마련
-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
  - 전방위적 FTA 확산, 초국적 협력과 경쟁의 증대, 아시아 경제권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하여 국토경쟁력 강화 및 개방형 국토전략 수립
  -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지원·보완할 수 있는 전략 마련
  -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,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 초고속·친환경 교통망시대에 부합하는 국토전략 마련
- 저출산·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·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토관리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설정
  -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저성장시대 진입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정책 패러다임 제시
  - G20 정상회담 개최국 선정, ODA<sup>1)</sup> 확대 등 국가품격 제고에 부합하는 국토구조 형성
  - 첨단 정보화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토구조로 개편

1) ODA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 : 공적개발원조.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.

## 2) 지역여건의 변화

- 민선5기 출범을 통해 성장과 개발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인 변영 패러다임 정착
  - 변영 패러다임의 기본개념은 그 동안 성장 및 개발 일변도의 지역발전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, 환경과 인간의 공존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성장의 열매를 고루 향유하는 것임
-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지역내 100만 대도시 출현
  - 창원, 마산, 진해 3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탄생. 경남은 20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었으며, 규모면에서 대도시로 전환된 통합창원시의 특성화발전과 타 시군의 연계발전이 지역발전의 과제로 대두
- 거가대교, KTX 개통 등 광역발전의 교통인프라 확충
  - 2010년 경남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개통되어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충되었으며, 수도권과 창원을 직접 연결하는 KTX가 개통되어 경남지역도 전국 만나질 생활권으로 편입되었음
- 저출산·고령화의 현실화 및 다국가간 FTA 체결로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도래
  - 200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인구성장 정체와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(경남 군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2009년 30% 돌파)
  -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라 한-EU, 한-미 FTA 등 다국가간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농어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

## 2. 계획수립의 목적

-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력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며, 유·무형의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·개발·보존하기 위한 장·단기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·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함
- 2011년 1월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11~2020) 등 상위계획의 기초와 정책을 경상남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차원의 균형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- 또한, 민선5기 경상남도 도정철학인 변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고,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을 이루며 경남의 전통적인 기간산업과 21세기 미래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
-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이동성 제고와 문화·관광, 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응한 지역 고유의 역사·문화·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과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,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추구 등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패턴 변화추이를 수용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

- 산업적으로는 조선·기계·항공 등 국가성장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구조고도화와 풍력·연료전지·태양광 등 새로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자 함
- 이상의 다양한 외생적 여건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21세기 새로운 미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혁신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도록 함

##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

### 1. 계획의 성격 및 위상

#### ■ 국토기본법 상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는 도 단위 최상위 “법정계획”

-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 단위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임

#### ■ 경남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“중장기발전계획”

- 경상남도가 나아가 할 미래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1세기 경상남도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 제시

#### ■ 공간환경·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하는 “종합계획”

-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11-2010)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공간환경·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·조정하는 종합계획임

#### ■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도 차원의 “지역계획”

-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11-2020)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지역 계획임

#### ■ 시·군별,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“지침계획”

-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수립하게 될 시·도시기본계획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하위 법정계획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상위 지침계획임

### 2. 계획의 법적 근거 및 범위

#### 1) 법적 근거 및 수립절차

-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립됨
-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됨. 즉,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,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도 단위에서 구체화한 계획임
- 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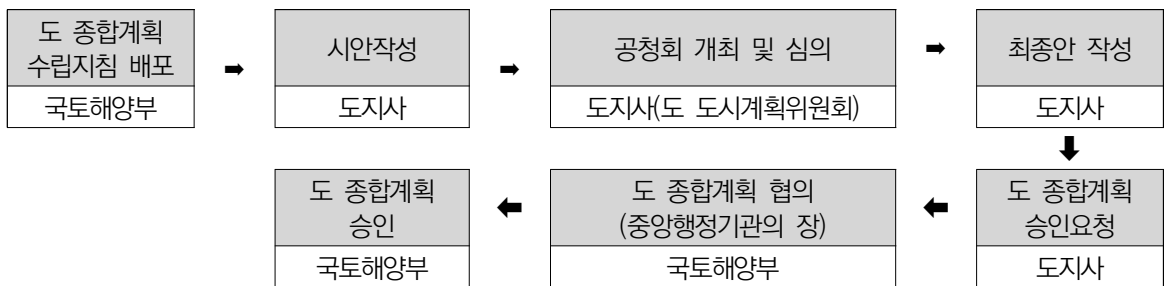
※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 제2항

1. 국토종합계획 :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
2. 도종합계획 :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

※ 「국토기본법」 제7조

-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,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- ②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.

- 도종합계획은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·배포(국토해양부장관) → ②도종합계획 수립(도지사) → ③공청회 개최(도지사) → ④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⑤국토부장관 승인요청(도지사) → 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(국토해양부장관) → ⑦도종합계획 승인(국토해양부장관)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



## 2) 계획의 범위

### (1) 시간적 범위

- 계획기간 : 2012 - 2020년
- 기준년도 : 2010년

### (2) 공간적 범위

#### ■ 광역적 의미의 범위

- 경상남도의 지리적·공간적 위치와 정부의 5+2 광역경제권,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국토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부산·울산 등 동남권 일부 지역과 전남·전북 등 호남 광역경제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광역적 범위로 설정함

협회의 의미의 실천 범위

-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의미의 공간범위로는 2010년 말 경상남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창원시, 진주시 등 8개 시와 거창, 합천 등 10개 군지역, 그리고 행정적 관리구역에 포함되는 남해 일원을 대상으로 함

(3) 내용적 범위

-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도종합계획 수립지침(2011. 3)에 따라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,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, 부문별 계획, 시·군별 발전방향,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음
  -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11~2020)에서 제시한 국토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창의적 수용함으로써 2020년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의 방향성과 전략 제시
  - 지난 2008년 수립된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(2008~2020) 이후에 나타난 지역차원의 변화와 미래전망을 토대로 자주적인 지역의 미래발전 방향성과 전략, 각 부문별 실천과제 등 제시

※ 도종합계획의 내용

① 『국토기본법』 제13조

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.

1. 지역현황·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
2.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
3.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
4. 교통, 물류,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
5.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
6.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② 『국토기본법』 시행령 제5조 제2항

1. 주택, 상하수도, 공원, 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2. 문화·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
3.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
5. 자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